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6. 7. 27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7. 2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위원회 운영상 “간사”로 표기된 직책을 실제 수행 기능에 부합하는 “부위원장”으로 정비하여, 조례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위상을 명확히 하려함.

2. 주요내용

- 제11조(간사) → (부위원장)
-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<u>간사</u>) 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 ② <u>간사</u>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<u>간사가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 리한다.	제11조(<u>부위원장</u>) ① ---- <u>부위원</u> <u>장</u> -----. ② <u>부위원장</u> 은 ----- -----. ③ ----- 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---.